

2023년 9월 1일

Preview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온라인 또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 기준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 이슈와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민후 소식 Minwho News

‘영화 ‘명량’, ‘한산’ 제작사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1심에 이어 전부 승소’

‘SW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 사건서 무죄판결 이끌어’

리걸이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업 역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다.

이때 공개된 웹페이지의 기능은 자신의 정보(개인정보, 저작물 등)를 남에게 '공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챗GPT 등 생성형 AI 보급으로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십년 축적된 공개된 웹페이지는 '공개'에 한정된 게재자의 의사에 반하여 AI 데이터의 대량 '수집·이용'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그러나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공개의 의사와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는 명백하게 구분돼야 하고, 이 구분의 노력 및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공개의 의사와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과 이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간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일례로 두 명의 작가(폴 트램블레이, 모나 어워드)는 6월 28일 챗GPT가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중에 자신의 저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P.M.의 약자를 사용한 익명의 정보주체 등은 챗GPT가 개인정보를 전례 없이 대량으로 스크래핑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 작가들과 정보주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자신들은 저작물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지, 수집·이용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AI 활용 및 그에 따른 편의나 경제적 이익 등을 강조하는 기업은 이 기회에 공개된 웹페이지의 데이터에 대해 아예 옵트 아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의 공개의 의사를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에 대한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로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저작자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하다. 과거 빅데이터 출현 때부터 이러한 주장은 반복됐지만,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도래 이후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는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된 바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웹페이지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량의 저작물이나 개인정보 등이 게재되고 있으나, 이들이 과연 공개의 의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까지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도 않았고, 밝히고 싶어도 자신의 의사를 밝힐 표준화된 도구 또는 AI와의 소통 도구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AI 데이터는 앞으로 생성될 데이터가 경제성이나 최신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축적된 데이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성될 데이터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강조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이를 통해 AI 데이터 확보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앞으로 생성될 웹페이지의 대량의 저작물이나 개인정보 등에 대해, 공개의 의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집·이용 허락의 의사까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된 의사표시 도구의 도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오픈 인 방식은 준수해야 하는 바 표준화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개의 의사만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미 게재된 웹페이지에도 표준화된 도구 보급에 힘쓰므로써 법적 위험 없는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리걸이슈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자가 알아야 할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대부분의 생활이 웹이나 앱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에, 우리는 다양한 앱이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를 기재해 회원가입하기도 하고, 반면 가입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며 회원 탈퇴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웹이나 앱을 관리하는 주체인 회사들은 개인 회원이 탈퇴 신청을 하면 “탈퇴하시겠습니까?, 삭제된 데이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고지하며 일견 개인회원의 개인정보가 해당 웹페이지에서 영원히 삭제하는 것처럼 절차를 진행시킨다.

그런데, 과연 웹페이지나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하였던 개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퇴와 동시에 데이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일까.

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자발적 탈퇴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관이나 파기 절차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
T. 02-532-3425
E. hanjy@minwho.kr

탈퇴회원의 개인정보의 파기나 보관에 관한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의2).

그렇기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의 파기나 보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 방심하였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

* 탈퇴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보관의 기준

(1) 자발적 탈퇴회원의 경우

웹페이지나 앱의 관리자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에 유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6).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다른 법령의 예외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여기서, 다른 법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예컨대 아래와 같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 소비자의 불만·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

즉, 위 법률이 정한 의무 보존 항목 및 목적은 법률에 따라 해당 의무 보존 기간 동안 계속 활동하는 유효회원들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위 의무 보존 기간이 도과한 항목은 기간 도과와 함께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물리적 저장소에서도 데이터가 영구히 삭제되도록 데이터 파기 및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2) 휴면회원의 경우

웹페이지나 앱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의 경우, 웹이나 앱 관리자는 휴면회원이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에, 즉, 11개월이 되는 때에, 해당 휴면회원에게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및 시행령 제48조의5).

-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면회원이 위 통지를 최종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때에 통지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이용이 없다면, 웹이나 앱의 관리자는 휴면회원이 최종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즉, 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

다만, 위 (1)에서 정리한 다른 법령이 정한 의무 보관 항목과 목적 및 기간은 휴면회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다른 법령의 예시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물리적 저장소에서도 데이터가 영구히 삭제되도록 데이터 파기 및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웹 또는 앱 관리자가 탈퇴한 회원이나 휴면회원의 각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에 필요한 절차를 기본적으로 인지하여 사업에 적용한다면, 웹 또는 앱 관리자는 이용자들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안정적이고 적법한 사업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민후 소식

영화 '명량', '한산' 제작사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1심에 이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한산' 속 소품, CG 결과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 '한산'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영화 속 소품 및 장면 등에 대한 수십 억 원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방송 작품의 표현을 무단 사용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 등에서의 표현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므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창작물의 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KBS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후속 영화작품인 '한산' 또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에 활용된 표현 등이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점과 역사적 사료를 시각화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 창작물 속 표현과 피고 창작물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언론기사 보기

MBC - [KBS '불멸의 이순신',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TV조선 - ['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동아일보 - ["영화 '명량',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 침해 아냐" KBS, 항소심도 패소](#)

민후 소식

SW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 사건서 무죄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MSC 나스트란, 파트란 프로그램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MSC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임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고소인은 피고인의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하였음을 주장, 피고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프로그램 국내 판매업체의 협조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법 복제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SW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